

「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출연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스마트제조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스마트공장 현장체험형 교육을 통한 전기·전자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양성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스마트화 촉진
- 이에 출연기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4회계연도 구미시 세출 예산 편성에 앞서 한국산업단지공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출연대상기관 : 한국산업단지공단

- (1) 설 립 일 : 1964. 8. 12.
- (2) 조직 및 인원 : 4본부 7실 1연구실 1기획단 13개지역본부 (670명)
- (3) 소 재 지 : 대구광역시 동구 침단로 39 (신서동) 한국산업단지공단
- (4) 기관 주요사업
 - 1)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관리 및 촉진사업

- 2) 산업단지 개발·조성·분양·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
- 3) 입주업체의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촉진 사업
- 4) 공장설립 관련 업무지원 및 공장 이전·집단화를 위한 사업
- 5)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
- 6)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

나. 사업개요

- (1) 사 업 명 :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
- (2) 사업기간 : 2023년 7월 ~ 2025년 12월(30개월)
- (3) 총사업비 : 21.33억원(도 3.3, 시 7.7, 민 10.33(현물))
 - 1) ‘24년 출연계획 : 3억원 (도 0.9, 시 2.1)
 - 2) 연차별 소요예산(안)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사업비	연차별 투자계획		
		‘23년	‘24년	‘25년
합 계	2,133	754	625	754
도 비	330	120	90	120
시 비	770	280	210	280
민 간	1,033	354	325	354

- (4) 추진주체 : 경상북도, 구미시
- (5) 전담기관 : 한국산업단지공단
- (6) 주관기관 : 금오공과대학교
- (7) 사업내용

- 1) 기업 재직자·구직자 대상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 및
구직자 취업연계
- 2) 스마트제조 분야 기업 애로기술해결 컨설팅을 통해 지역기업의
스마트제조 역량 강화 및 기업성장 지원
- 3) 전자산업 특화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및 교육장비 운영을
통한 실무 중심형 교육 운영

(8) 예산 산출 근거

(단위 : 백만원)

연번	구분	주요내용	소계	지방비	민자
합 계			625	300	325
1	인력양성	-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및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활용한 전문인력 양성	275	250	25
2	기업지원	- 전문가를 통해 스마트공장 관련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 컨설팅	30	30	
3	테스트베드 운영	- 실무 교육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운영 및 소프트웨어 고도화 추진	320	20	300

다. 근거법령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 제3조
-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6조의3
-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11조, 제19조
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의21, 26
- 「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」 제5조, 제9조, 제10조

라.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

- 2019. 8. : 스마트 산단 조성 사업계획서 제출(산업부)
- 2019. 9. : 스마트 산단 구미 공모선정
- 2021. 2. :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수행기관 선정 공모
- 2021. 5.~7. : 사업 협약체결, 전문인력 및 운영조직 구축
- 2021. 7.~12. : 구직자·재직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
- 2022. 8. 16. :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개소식
- 2022. 8.~ :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집체교육 실시
- 2023. 7.~ : 1차년도 사업 시행
- 2024. 1.~ : 2차년도 사업 시행

마. 기대효과

- 스마트제조시스템, 스마트설비 등을 구축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제조기업의 스마트화·디지털화 촉진
-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를 활용하여 스마트제조 분야 인력양성 지원으로 인력난 해소 및 기업 경쟁력 강화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,
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 제3조

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6조의3

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11조, 제19조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의21, 26

「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」 제5조, 제9조, 제10조

○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출연안은

- 스마트제조 교육프로그램 운영, 구직자 취업 연계 등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스마트제조 분야의 인력 양성을 통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, 이 사업을 통해 배출된 인력들이 관내에서 취업 후 정주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꾸준히 순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